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대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617
----------	-------

발의연월일 : 2025. 9. 2.

발 의 자 : 강대식 · 박준태 · 강선영
박덕흠 · 배준영 · 구자근
김선교 · 최수진 · 김 건
김승수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경우 그 보호자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는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과몰입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그러나 이 보호자 동의 규정은 게임의 이용 등급과 관계없이 모든 인터넷게임에 일률적으로 적용됨으로써 선정성·폭력성 등이 배제된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이용하려는 경우에도 보호자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 청소년의 여가·취미 활동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한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전체이용가 인터넷게임을 제공하는 자의 경우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보호자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의 여가·취미 생활을 누릴 권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4조

제1항).

법률 제 호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 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
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16세 미만 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친
권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게임물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제공되는 게임물(이하 “인터넷게임”이라 한다)의 공급자(「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자로 신고한 자를 말하며, 같은 조 제1항 후단 및 제4항에 따라 신고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이 16세 미만의 청소년일 경우에는 친권자등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단서 신설>	제24조(인터넷게임 이용자의 친권자등의 동의) ① ----- ----- ----- ----- ----- ----- ----- ----- ----- ----- ----- ----- ----- ----- ----- ----- ----- . 다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제1호의 전체이용가 게임물에 해당하는 인터넷게임의 공급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16세 미만

② (생 략)	<u>청소년의 회원 가입에 대한 친 권자등의 동의를 받지 아니할 수 있다.</u> ② (현행과 같음)
----------------	---